

해외시찰 보고서

- 프랑스, 독일, 영국 사례 -

경남사무소 소장 손 정 배
조정1팀 차장 류 석 창

I.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느 나라에서나 '언론의 자유'는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그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의 문제는 각국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독일, 영국은 근대 문명을 일찍 꽃피운 나라들이며, 언론의 역사 또한 오래된 나라들이다. 이러한 '언론 선진국' 들에서조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 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 것 같았다.

이 글에서는 각국의 개괄적 언론환경이나 방문기관 개요, 대담내용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방문기관 탐방

1. 프랑스 Le Figaro

(1) Le Figaro 개요

- Le Figaro는 1826년 주간지 타블로이드판으로 당시 연극계의 거장이었던 보마르셰에 의해 창간되었다. 신문의 제호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원작자인 보마르셰가 오페라의 제목을 따서 지었다.

- 1866년 주간지에서 정치논설 중심의 일간지로 바뀌었다.

- 나치 괴뢰정권이 비시(Vichy)를 수도로 남부독일을 통치하자 1942년 11월 23일 자진 폐간하였다. 종전 후 프랑스 정부는 1942년 11월 26일 이후 발행한 신문에 대해 반민족지로 강제 폐간시켰는데, Le Figaro의 경우 4일만 더 발행했었다면 운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 1944년 프랑스 해방군의 파리 입성 전날 복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급 정론지로서 그 위상을 이어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익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래 들어서는 기사내용에서 이념성이 많이 퇴색했다고 한다.

- 현재 발행부수는 43만부¹⁾ 정도로 발행부수로는 프랑스 중앙일간지 중 네 번째다.

1) 프랑스 신문 발행부수 공사기구 OJD(L'Office de Justification de la Diffusion)의 2004/2005 발표



〈프랑스 중앙일간지 발행부수(2004/2005)〉

중앙일간지	부수
LE PARISIEN + AUJOURD'HUI EN FRANCE (Couplage)	673,495
L'EQUIPE EDITION GENERALE	505,177
LE MONDE	492,184
LE FIGARO	436,006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328,714
AUJOURD'HUI EN FRANCE	251,633
LIBERATION	200,211
LES ECHOS	177,273
PARIS TURF	135,201
LA TRIBUNE	124,528
LA CROIX	121,401
FRANCE SOIR	108,687
L'HUMANITE	73,127

출처 : ASSOCIATION POUR LE CONTROLE DE LA DIFFUSION DES MEDIA, 2005.

(2) 대담 요지

면담자 : Arnaud Rodier (경제부 편집부국장),
Sophie Fay (경제부 앙케이트 논단 담당)

Q : Sophie Fay씨는 Le Monde에서 근무하다 옮긴 지 얼마 안되었다고 들었다. Le Monde와 Le Figaro의 언론불만 처리 시스템은 어떻게 다른가?

A : Le Monde에서는 독자불만이 접수되면 옴부즈맨팀이 종합하여 편집부에 전달하며, 자체적으로 독자의 불만사항과 이에 대한 편집진 혹은 기자들의 반응을 매주 정리하여 게재한다. Le Figaro의 경우 독자불만을 처리하는 이러한 정교한 시스템이 없다.

Q : 그렇다면 Le Figaro의 경우 언론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부서가 없는가?

A : 그렇다. 기사에 따라 담당부서가 회의를 통해 독자불만을 해결한다. 물론, 기사가 독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같은 지면, 같은 크기의 반론문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다.

Q : 오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지침이나 요강이 있는가?

A : 별도의 내부지침이나 요강은 없다. (지갑에서 기자증을 보여 주며) 이것은 '기자 신분카드 발급위원회'(La Commission de la cart d'identite des journalistes)²⁾에서 매년 발급되는 것으로, 이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Q : 미국에서는 최근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가 다시 한번 언론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기사는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르피가로의 시각이 궁금하다.

A : 취재원 공개는 안된다. 프랑스에서는 법과 판례로 보장된다.

Q : 영국의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와 같이 독자불만을 접수·처리하여 언론보도 관련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기구가 프랑스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 언론사들이 독자불만에 충실히 대응하고 있으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등 오보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기자 신분카드 발급위원회 : 공공영역과 관련된 신문 및 오디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기업 및 단체를 대표하는 8명의 사용자 대표와 기자증을 소지한 기자들에 의해 선출된 8명의 기자 대표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들은 3년마다 교체된다.

2. 독일 바이에른 고등법원

(1) 독일 언론법 체계 및 반론권 제도의 특징

(가) 언론법 체계

- 독일의 헌법은 대표민주제 원칙 및 연방과 지방 정부(州)간의 권력분배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신문·출판법 및 방송법 등 대부분의 언론관계 법은 16개 지방주의 관할권에 속한다.

- 각 주 출판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정보(제공)청구권(Informationsanspruch), 주의의무(Sorgfaltspflicht), 간행요목(Imprimatur), 책임 편집자(Verantwortlicher Redakteur), 표시의무(Kennzeichnungspflicht), 반박기사(Gegendarstellung), 증언거부권(Zeugnisverweigerungsrecht)과 압류(Beschlagnahme)·수색 등을 들 수 있다.

- 현재 독일 방송법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연방제도에 따라 각 주가 제정한 미디어법과 각 방송국에 관한 법률들이 있다.

(나) 반론권 제도의 특징

- 독일의 반론권 제도는 프랑스 보다 훨씬 합리적 이고도 세련된 구체적 절차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반론권의 주체, 객체, 게재 의무자, 대상 등에서 프랑스 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 프랑스가 논평이나 의견 등 가치판단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반면 독일은 사실주장에 대한 반론만 인정하고 있다.

- 반론권의 청구방법에서도 반론권자의 자필서명,

문서화 등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 운용이 경직되어 있다.

(2) 대담 요지

면담자 : Peter Lemmers(판사), Walter Seitz(법학교수,
바이에른 고등법원 전 법원장)

Q : 바이에른 고등법원 언론전담재판부가 연간 처리하는 언론관련 재판은 얼마나 되는가?

A : 바이에른 1심법원 전체로 보면 연간 300여건 정도이고, 항소법원은 60~70여건 정도이다. 참고로 독일에서 언론 관련 재판이 많은 도시를 꼽으라면 뮌헨, 함부르크, 베를린을 들 수 있다.

Q : 독일의 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³⁾의 분쟁조정기능과 역할에 대한 독일법원의 평가는?

A : 조정기능은 있지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연간 150 ~ 200건 정도⁴⁾ 다뤄지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간다. 평의회 자체가 주로 언론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선호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Q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의 종류는?

A : 바이에른주 언론법과 독일 연방 민법에 의하여 반론, 정정, 사전금지청구, 금전적 손해배상, 이익 환수 등 모든 청구가 가능하다. 독일의 언론법은 주마다 다르며 바이에른주 언론법은 1949년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른 주들은 1965년 이후 법이 정비된 반면 바이에른주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다.

3) 독일 언론평의회 조직 : 비영리 법인체이며, 주요 발행인단체와 기자단체들의 결합체임. 의장이나 산하 기구들의 의장이 모두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순수하게 자율적인 감시기구라 볼 수 있음.

4) 독일 언론평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평균 650건 이상의 불만신청을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그 중 약 2/3는 불만처리위원회의 공식 결정에 앞서 사무국의 조정하에 초기 단계에서 처리되고 있다. 대담 과정에서 언급된 150 ~ 200건 정도의 숫자는 불만처리위원회의 공식 결정에까지 이르는 사건수인 것으로 판단됨.



Q : 위자료 산정시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가?

A : 언론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일정한 기준이 없다. 사건마다 모두 다르며 청구액수와 피고의 방어 논지, 그리고 판사의 재량에 의해 금액이 결정된다. 언론피해 관련 소송은 상당히 어려우며 전문화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가 힘들다. 또한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Q : 독일의 다른 주들은 반론청구소송을 가처분절차로 진행하는 반면 바이에른주에서만 본안절차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오해다. 반론청구소송은 독일의 전체 법원이 가처분절차로 진행한다.

Q : 언론사건에서도 참심제를 실시하는가?

A : 참심제는 민사법원 사건 중 상법 관련 사건은 참심제로 재판하고 있으나, 다른 일반 민사사건이나 언론사건은 참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법원 및 노동법원에서는 참심제를 실시한다.

Q : 언론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가 실무 운영상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 제도적인 개혁 사안은 별로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언론 관련 소송은 판례가 특별히 중요한 분야이며, 따라서 판례로써 개선되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에서의 언론 관련 소송사건 중 형식적인 요건 미비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심 사건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이 미비할 경우 재판부가 도와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부의 직권 심리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프랑스와 같이 의견기사에 대해서까지 반론보도청구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논의중에 있다.

Q :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와 인터넷

매체의 범주는?

A : 소송건수는 기존 매체의 두배 정도 되며, 인터넷 매체의 범주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나 보통 활자 매체와 동일한 내용이 자체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되는 형태의 e-paper를 말하며, 각 주 협약에 의해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 리스트가 있다.

(※ 대담과정에서 Walter Seitz 교수는 언론전담재판부를 거친 주요사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고, 언론평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법원의 언론재판 기능에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었다.)

3. 독일 Süddeutsche Zeitung

(1) 독일언론 및 Süddeutsche Zeitung 개요

(가) 독일언론

- 독일은 헌법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현재 약 430종 이상의 일간지, 60종 이상의 주간지, 2만 이상의 각종 잡지가 발간되고 있다. 신문 및 잡지는 특별지를 제외하고 일간, 주간, 월간지를 포함해 2,600개 정도이다. 전국지로 유명한 일간지로는 <디 벨트> <도이체 자이팅>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팅> <쥐트도이체 자이팅> <라이니셰 메르쿠어> 등이 있고, 주간지로는 <디 자이트> <데어 슈피겔> <슈테른> 등이 있다.

- 독일의 방송은 연방정부의 감독하에 공단(公團)으로 운영된다. 현재 9개의 방송공단은 각각 독자적으로 방송내용을 편성·방송하고 있으며 '독일의 소리' 방송은 30개 국어로, '독일국영 방송'은 전유럽을 대상으로 방송한다. 텔레비전 방송사는 11개주 방송사 외에 이를 공단형태로 운영하는 ARD(제1TV)와 ZDF(제2TV)가 있다. 특히 ZDF 방송사는 유럽 최대이다.

(나) Süddeutsche Zeitung

-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으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디 벨트와 함께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일간지 중 하나이다.

- 1945년 바이에른에서 발행허가를 받은 최초의 신문이며, 현재 발행부수는 40만부 정도이다.

- 신중하고도 정확한 뉴스 보도와 민감한 문제점에 대한 사려깊고도 솔직한 편집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중도 좌파적이면서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대담 요지

면담자 : Christian Schmidt(서내 법무담당 변호사),

Gerd Sowein(독자담당),

Dr.Joachim Käppner(국내정치담당)

Q :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독자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이 있는가?

A : 독자투고 지면(2면)을 담당하는 직원이 독자불만을 접수, 처리한다. 정정이나 반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독자담당이 편집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편집부는 수용여부에 대해 공개토론 후 결정한다.

Q : 불만신청의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A : 하루에 평균 136건 정도이나 일반적인 투고가 대부분이고 정정이나 반론요청은 1주일내 15건 정도이다.

Q : 정정이나 반론요청 건수 중 언론사가 수용하는 비율은?

A : 3/4 정도는 당사자와 합의로 종결되고, 1/4 정도는 소송이 제기된다. 신청인과 합의하는 데 있어 독자투고관은 큰 역할을 한다. 1면에 보도가 나갔더라도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면에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1면에 정정이나 반론이 실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언론사로서는 타격

이 크기 때문이다.

Q :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일선 기자들이 취재방법이나 기사작성방법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고 있는 자율지침이 있는가?

A : 취재방법 및 기사작성방법 등은 언론인 교육과정에서 철저히 교육받는다. 또한 언론인들의 보도 자율지침으로는 독일언론평의회의 지침이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Q : 미국에서는 최근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가 다시 한번 언론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기자는 취재원 공개를 끝내 거부해 결국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A : 분노할 사건이다. 독일은 취재원 보호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사, 기자, 변호사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누설금지 의무를 진다.

Q :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피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문제는?

A : 독일에서는 뉴스까지 제공하는 형태의 포털사이트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사 작성자가 1차 책임, 기사를 인용한 포털사이트가 2차 책임, 인용 보도한 기자가 3차 책임을 진다.

Q : 쥐트도이체차이퉁의 보도에 대하여 언론평의회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는가?

A : 과거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독자투고를 게재하면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어 이라크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취지가 왜곡 전달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평의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

4. 영국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

(1) PCC 개요



- PCC의 전신인 언론평의회(The Press Council)가 공정성과 효율성 등 여러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해체된 후 1990년 켈커트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91년 1월 출범했다.

- PCC는 현재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의 임명은 지명위원회(Appointment Commission)가 전담하고 있다. 17명의 위원 중 7명은 언론사 편집장이며, 나머지는 일반 시민대표이다.

- PCC의 연간 예산은 약 150만 파운드 정도이며, 대부분 회원 언론사에게서 할당해 조달하고 있다. 신문과 정기간행물 등 회원사들로부터 기부금을 걷는 전담 기구는 언론재정표준위원회(PRESSBOF, Press Standards Board of Finance)이다.

(2) 불만 처리절차

- 시민들은 누구나 PCC에 불만을 제소할 수 있으며, 비용은 들지 않는다.

- 불만이 제기되면 PCC 위원은 먼저 해당 언론사 '독자대표'(representative to readers)에게 연락을 취한다. 영국의 5개 권위지들은 모두 독자대표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 연락을 받은 언론사 독자대표는 해당 기자와 부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정정할 것인지 해명할 것인지를 요구하게 된다. 만약 윤리강령 위반차원을 넘어서는 경우 언론사 독자대표의 손을 거쳐 전담변호사에게로 사안이 넘어간다.

- 이 과정에서 PCC는 빠른 시일 안에 불만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불만제소자와 신문사가 접촉할 기회를 마련하며,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PCC가 조사에 착수한다.

- 신문이 보도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위반했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PCC는 교정의 평결문을 내게 되는데, 신문은 평결문 전문을 원래 보도된 기사와 상당한 정도로 눈에 띄게 게재해야 한다.

(3) 언론불만 처리건수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건수	2,400	2,250	3,000	2,600	3,649	3,618

출처 : PCC, Annual Review 2004

- 2004년의 경우 신청인 중 일반인이 92.2%,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5.5%, 기타 2.3%였다.

- 보도실천강령 위반 통계를 보면 보도의 정확성 위반이 56.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장애인이나 인종 관련 차별보도(13%)와 사생활침해(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3.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⁵⁾

-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6개월간 처리한 사건⁶⁾ 중 70%는 행동실천강령과 무관한 분야(광고라든가 의견이나 가치판단 등과 관련된 것들) 혹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건들이며, 12.3%는 행동실천강령 위반이 아닌 사건, 11.7%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 4.4%는 신청인 취하, 1.2%가 재정결정 단계(총 22건 중 결정 5건, 기각 13건, 계속 4건)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보도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은 총 17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많다. 어린이나 장애인, 성적 피해자, 인종차별, 범죄보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도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 신청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영국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제3자에 의한 불만의 제소가 가능하다.

6) PCC, Report No 68/69, p4.

(4) 대담 요지

면담자 : William Gore (사무국 부국장)

Q : PCC 위원 중 언론인 7명 외에 10명의 위원들의 직업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이 있는가?

A : 없다. 직업이나 직책은 고려사항이 아니고 언론에 대한 관심도가 고려사항이다.

Q : PCC의 결정에 대하여 언론사가 수용을 거부한 경우는 없는가?

A : 지금까지는 전부 수용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PCC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것을 언론사들도 알고 있고, 그러한 상황을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한다.

Q : 켈커트위원회가 1993년 PCC의 역할을 비판하면서 다른 대체기관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들었다.

A : 사실이다. 켈커트위원회가 PCC에 대해 진정한 독립기구가 아니라 언론계에 의해 구성되고, 재정지원을 받고, 지배되고 있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강력한 기관⁷⁾으로 대체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에서 반대했다. 이후 PCC는 국민과 언론, 정부 등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이었다.

Q : 인터넷언론이나 방송 관련 신청은 없는가?

A : 언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방송에 대해서는 정부기구인 'Office of Communications'가 방송에 대한 규제와 방송에 의한 피해구제까지 담당⁸⁾하고 있다.

Q : PCC에서 해결이 안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는 사례가 많은가?

A :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잘 모르지만 별로 안되는 것으로 안다. 과거 PCC에서 조정한 결과 언론사가 보도를 하여 해결이 된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그 때 법원은 PCC의 노력과 언론사의 후속보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청구액을 상당 부분 감액했다.

(※ PCC의 17명의 위원 중 언론인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위원은 일반 회사원, 초빙교수, 사기업 대표이사 등으로 직역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5. 영국 The Guardian

(1) The Guardian 개요

- 1821년 존 에드워드 테일러가 창간하였으며, 현재 소유는 Scott 재단이다. Scott 재단은 통상적인 신문사주의 성격이 없어 특정 사주의 사업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영은 배제되며,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 영국 유일의 독립언론이자 좌파적 성향의 고급 진보지로 평가받으며, 96년부터 인터넷 온라인 쪽으로 눈을 돌려 제2의 창간을 이룩했다. 99년에는 가디언 언리미티드를 만들어 20~30명의 인원을 배치, 현재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한달에 1천만명이 접속하고 있다.

- 또한, 97년 영국 최초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독자불만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2) 대담 요지

7) 켈커트위원회는 언론불만처리법정(Press Complaints Tribunal)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했다. 이 법정은 보도정지, 사과, 정정, 반론 등에 관한 결정 뿐 아니라 배상 또는 벌금 부과를 명령할 수 있는 특별재판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8) 'Office of Communications' 산하 방송기준위원회는 1996년 개정된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6)에 따라 설립된 방송내용 심의 기구로, 영국내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불만을 다룬다.



* 대담자 : Ian Meyes(가디언 ombudsman)

Q : ombudsman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 기자들과 신분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A : Scott 재단에서 나의 신분을 보장하며, 편집장이 ombudsman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 독립성이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확보되는 것이지 그냥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편집장이나 기자들과 충돌을 빚는 경우도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Q : 불만신청이 접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하는가?

A : 해당 기자나 편집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듣는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여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정란에 정정하고,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내가 직접 칼럼을 쓴다.

Q : 칼럼을 쓸 경우 편집장이 거부할 수도 있나?

A : 그럴 수는 없다. 그건 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편집장이라 해도 간섭하지는 못한다.

Q : 연간 접수, 처리하는 불만신청 건수는?

A : 일년에 약 1,600건 정도를 처리한다.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가 많다.

Q : 오보를 예방하기 위한 보도원칙이나 기준이 있는가?

A : PCC에서 만든 보도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이 있으며, 가디언 내부의 편집강령(Editorial Code)이 있다. 편집강령의 경우 보다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다.

Q : 불만 접수후 처리기간은?

A : 바로 다음날 보도되는 것이 처리사건 중 38% 정도이고, 83% 정도는 일주일 안에, 99%가 한달 안에 해결된다. 나머지 1% 정도가 한달 넘게 걸린다.

(※ The Guardian에서는 기자들의 편집회의를 직접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자유롭고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전 날 보도된 기사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Ⅲ. 맺음말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언론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 새로운 매체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어 급기야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매체의 다양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유럽의 '언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우리가 오히려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나, 이들 나라 언론인들이 갖는 직업의식이나 자부심, 긍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언론평해구제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유럽 언론사들은 우리의 언론 관련 법제가 그들 나라보다 더욱 발전된 것 같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평해구제에 있어 자율규제와 제3의 기관에 의한 자율규제 중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외 언론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은 언론사 내부적인 피해구제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ombudsman제도의 일종인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당장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자율적인 고충처리인 제도를 타율적으로 강제하려 한다는 비난도 일부 있으나, 시간을 두고 가다듬는다면 언론중재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